



제429회국회(정기회)
제9차 교육위원회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유해물질 검출된 식재료 사용 금지 등 >
■ 김문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3688호)

2025. 11.

교 육 위 원 회

전문위원 윤상열

【 목 차 】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유해물질 검출된 식재료 사용금지 등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문수의원 등 12인

2. 발의연월일 : 2025. 10. 23.

3. 회부연월일 : 2025. 10. 2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과 국민 식생활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식생활습관 및 식생활교육 등에 관한 규정을 두어 교육적 의미를 제시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학교급식이 교육의 일환이라는 점을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학교급식 식재료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유해물질에 오염되지 않은 식재료를 학교급식에 사용하도록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학교급식을 교육의 일환으로 규정하고, 관계법령상 유해물질을 학교급식 식재료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여 보다 안전한 학교급식 환경을 만들어 학생들의 건강권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조 등).

Ⅲ. 검토의견

1. 유해물질 검출된 식재료 사용금지 등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학교급식을 교육의 일환으로 규정하고, 영양·식생활교육을 통하여 학생의 올바른 식생활 관리능력을 배양하며, 유해물질이 검출되어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식재료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3조제1항, 제16조제1항제5호, 제18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학교급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u>학생의</u> 건전한 심신의 발달과 국민 식생활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u>학교급</u> <u>식이 교육의 일환으로서 학생의</u> ----- ----- --.
제3조(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질의 학교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u>영양교육</u> 을 통한 학생의 올바른 식생활 관리능	제3조(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 ----- ----- ----- <u>영양·식생활교육</u> ----- 을-----

력 배양과 전통 식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16조(품질 및 안전을 위한 준수사항) ① 학교의 장과 그 학교의 학교급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 교직원(이하 “학교급식관계교직원”이라 한다) 및 학교급식공급업자는 학교급식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재료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 4. (생 략) <신 설> ② ~ ④ (생 략) 제18조(학교급식 운영평가) 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학교급식 <u>운영의</u> 내실화와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학교급식의 <u>운영에</u> 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생 략)	----- ----- -----.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품질 및 안전을 위한 준수사항) ① ----- ----- ----- ----- ----- ----- -----. 1. ~ 4. (현행과 같음) 5.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95조제2항에 따라 유해물질이 검출되어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식재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8조(학교급식 운영평가) ① ----- ----- <u>운영 및 영양·식생활교육의</u>----- -----<u>운영 등에</u>----- -----. ② (현행과 같음)
--	---

나. 검토의견

□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95조제2항에 따라¹⁾ 유해물질이 검출된 식재료를 학교급식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명확하게 법률로 규정하여, 유해물질로 인하여 학생들의 건강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긍정적인 취지로 보임.

□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95조제2항은 유해물질이 검출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에 대해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폐기하거나 판매금지 등을 하도록 요청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어 해당 식재료가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것을 1차적으로 방지하고 있음.

또한, 「학교급식법」 제10조는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고²⁾, 「식품위생법」이나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해식품 등에 대한 판매 금지, 회수, 폐기처분 등의 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므로³⁾⁴⁾, 개정안의 입법실익

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95조(폐기 또는 판매금지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88조에 따른 검사나 제96조에 따른 재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검사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식품위생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1항에 따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으로서 유해물질이 검출되어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에 대하여 폐기하거나 판매금지 등을 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2) 「학교급식법」

제10조(식재료) ① 학교급식에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 그 밖에 식재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3) 「식품위생법」

제4조(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썩거나 상하거나 설익어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2.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그러할 염려가 있는 것.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이 충분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한편, 학교급식이 교육의 일환임을 규정하는 것과, 식생활교육을 명시하려는 개정안의 기타 규정은 「학교급식법」이 식생활 지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⁵⁾, 최근 청소년의 식습관 악화와 영양 불균형, 비만 증가 등 건강 위험 요소가 심화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타당한 입법 조치인 것으로 보임.

3. 병(病)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그러할 염려가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생 략)

제45조(위해식품등의 회수) ① 판매의 목적으로 식품등을 제조·가공·소분·수입 또는 판매한 영업자(「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해당 식품등이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7조제4항, 제8조, 제9조제4항, 제9조의3 또는 제12조의2제2항을 위반한 사실(식품등의 위해와 관련이 없는 위반사항을 제외한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유통 중인 해당 식품등을 회수하거나 회수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자는 회수계획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리 보고하여야 하며, 회수결과를 보고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식품등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수입한 식품등이고, 보고의무자가 해당 식품등을 수입한 자인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2조(폐기처분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7조제4항, 제8조, 제9조제4항, 제9조의3, 제12조의2제2항 또는 제44조제1항제3호를 위반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그 식품등을 압류 또는 폐기하게 하거나 용도·처리방법 등을 정하여 영업자에게 위해를 없애는 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4)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불법 수산물의 유통 금지 등)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산물은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원양산업발전법」 제13조제2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포획·채취한 수산물

2. 그 밖에 방사능 오염 등으로 인하여 국민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산물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 유통질서의 확립 및 위생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양식한 어획물 및 그 가공품의 처리에 관한 제한이나 금지

2. 수산물의 포장 및 용기의 제한이나 금지

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제한 또는 금지사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학교급식법」

제13조(식생활 지도 등) 학교의 장은 올바른 식생활습관의 형성, 식량생산 및 소비에 관한 이해 증진 및 전통 식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학생에게 식생활 관련 교육 및 지도를 하며, 보호자에게는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 개정안과 관련하여 교육부 등 관계기관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함.

[개정안 관련 교육부 등 의견]

< 유해물질 검출 식재료 사용금지 관련 >
○ 교육부: 신중검토 - 「학교급식법」 제10조(식재료)에서 이미 학교급식에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95조제2항에 따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으로서 유해물질이 검출되어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식품위생법」 제4조(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 제45조(위해식품등의 회수), 제72조(폐기처분 등) 및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불법 수산물의 유통 금지 등)에 따라 이미 판매 등 금지, 회수, 폐기처분 등의 조치가 시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학교급식법령에 동 사항을 추가 규정하는 것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식품의약품안전처: 신중검토 - 기존 수산물 안전관리 체계*를 통해 부적합 수산물에 대해 폐기 또는 판매금지를 하고 있어 조항 신설의 필요성이 낮음 * 해수부생산단계 안전성 조사 / 식약처수거·검사를 통한 유통관리 - 반면, 「식품위생법」과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상 안전관리 사항을 「학교급식법」에서 중복으로 규정함에 따른 일선 현장의 부담이나 혼란이 우려됨 - 아울러, 해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95조제2항은 그 대상이 ‘부적합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에 대한 것이므로 그 외 농산물 등과의 형평성 문제도 우려됨
○ 울산교육청 - 유해물질 검출 여부 확인을 위한 추가적인 검사 체계 및 지원요구가 증대되어 재정·인력 부담 증가할 수 있어, 유해물질 관리 및 검출 보고 사전체계 구축 필요
○ 강원·경북교육청 - 이견 없음
< 기타 규정 관련 >
○ 교육부: 이견없음 - 이미 「학교급식법」 제13조에서 학교의 장은 올바른 식생활습관의 형성, 식량생산 및 소비에 관한 이해증진 및 전통 식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학생에게 식생활 관련 및 지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성장기 학생들에게는 영양교육 뿐만 아니라 올바른 식생활습관 형성을 위해 식생활 교육도 중요함

○ 울산, 강원, 전북교육청: 일부수정

- 학생의 건강권을 확보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고, 건강유지를 위해 영양교육과 함께 식생활교육이 병행되어야 효과를 높일 수 있음.
- 다만, 학교급식 운영평가는 초·중등교육법령에 따른 학교평가 체계 내에서 반영하여 실시하는 것이 급식운영의 교육적 확보에 바람직함

○ 대한영양사협회: 일부수정

- 학생 건강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본 개정안 취지에 동의하나, 학교급식 운영평가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평가 체계 내에 반영해 실시함이 바람직함

문 의 처

02)6788-5184